

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상하수도사업소(하수과)

제정 1999·12·16 조례 제 311호
개정 2009·12·10 조례 제 813호
(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6·8·9 조례 제1267호
일부개정 2018·7·31 조례 제1420호
일부개정 2020·10·7 조례 제1628호
(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일부개정 2023·11·1 조례 제201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·8·9>

제1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3·11·1>

[본조신설 2018·7·31]

제2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·8·9>

1.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·지방양여금·용자금·교부세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삭제 <2009·12·10>
6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28조제5항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
7. 삭제 <2009·12·10>
8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·8·9>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3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4. 「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4조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 등)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,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 <개정 2016·8·9>

제5조(전용금지)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·8·9, 2020·10·7>

제6조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%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·8·9, 2020·10·7>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6·8·9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·8·9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·4·4 조례 제41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·12·10 조례 제813호,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.

부칙 〈2016·8·9 조례 제126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·7·31 조례 제142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·10·7 조례 제1628호,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다른 회계로”를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예비비”를 “예비비로 1%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”로 한다.

부칙 〈2023·11·1 조례 제201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